

임원인사규정시행세칙

제 정 2005. 05. 12

개 정 2017. 12. 19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임원 인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임면

제3조(임명원칙) 임원은 업무수행 능력과 지식을 가진 자로서, 재단 발전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4조(임명자격 기준) 임원의 임명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공무원 4급 이상 근무한자
2.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직급에서 5년 이상 경력 소지자
3. 재단에서 2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4. 상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석사이상의 학위 취득자
5. 문화예술 및 예술단체에 대한 경영능력과 조직 능력을 갖춘 전문 경영인
6. 저명한 문화예술인으로서 예술경영의 능력을 겸비한 자
7. 기타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개정 2017.12.19>

1.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6의 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기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0.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된 비위면직자로 퇴직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6조(임명추천 구비서류) 임원으로 임명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호적등본 2통
3. 주민등록 등·초본 각 2통
4. 신원진술서 4부
5. 채용신체검사서 1부
6. 졸업증명서(인사기록카드사본, 신원조회회보서) 1부
7. 시장(이사장)추천서

제7조(당연면직)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면직한다.

1. 임기가 만료된 때
2. 사망한 때

제8조(의원면직) 임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명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 장 복무

제9조(근무시간) 임원의 1일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2시간으로 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1주 40시간으로 한다.

제10조(휴식시간) ① 임원의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점심시간병행)은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으로 한다.(토요일 제외) 다만, 재단의 사정에 따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휴식시간은 재단의 질서와 규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휴일 및 휴가) ① 임원의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는 취업규정을 준용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원에 대하여는 연·월차 휴가를 부여 하지 아니한다.
- ③ 연·월차 휴가가 없는 대신 10일의 정기휴가를 부여하며 연임의 경우에는 12일의 정기휴가를 부여한다.
- ④ 제3항의 정기휴가 미 실시로 인한 잔여기간에 대한 휴가수당은 지급 하지 아니하며 정기휴가 기간을 초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인계인수) ① 임원이 신분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 또는 그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와 사무를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인수서에는 재단의 서류, 비품, 업무의 개요 등을 명기하며, 금전, 물품 등을 인계할 때에는 입회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인은 총무부장으로 한다.

제 4 장 상벌

제13조(임원의 포상) ① 규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포상 대상은 재단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이어야 한다.

- ② 포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14조(임원의 징계) 임원을 징계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안전으로 부의하여 이사회 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

제15조(징계사유 의 시효) 징계 의결 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16조(소집 및 의장) ① 임원 의 징계 의결 에 대하여는 이사장 이 소집 하며, 이사장 은 그 의장 이 된다. 다만 이사장 의 징계 의결 에 대하여는 감사 가 소집 하고 감사 가 그 의장 이 된다.

- ② 임원 의 징계 의결 에 따른 이사회 를 소집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 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 의결 기한) 이사회 는 징계 의결 요구서 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의결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 의 의결로써 30일 에 한하여 그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8조(의결 방법) ① 임원 의 징계 의결 은 재적 이사 과반수 의 출석 으로 성립 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 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9조(재심요청)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임원은 이사회에 징계처분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재심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의 양정) 이사회가 임원의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 혐의자의 소행, 공적, 개선의정, 징계요구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1조(문책의 효력) 규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책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임기 중 1회 경고 시에는 2월의 기간 동안 보수규정에 의한 기본급의 10분의 3을 감하고 지급한다.
2.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4월의 기간 동안 보수규정에 의한 기본급의 10분의 3을 감하고 지급한다.
3. 3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임한다.

제22조(적용의 특례) ① 수행한 업무내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양정 기준보다 경하게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징계양정 기준에 열거한 이외의 비위행위자에 대하여는 열거된 비위 유형 중 유사내용의 처벌기준에 따른다.

제23조(의결통고) 이사회가 임원에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임면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징계의 집행) ① 이사장은 징계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감사원 등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그 조사나 수사가 종료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